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275호
----------	---------

제출년월일 2023. 7. 3.
제출자 유매희, 김기남 의원

1. 제안이유

-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7. . ~ 2023. 7. .
 - 나) 예고결과 :
 - 2)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 2023. 6. . ~ 2023. 7. .
 - 나) 협의결과 : 김포시
 - 3) 관련부서 : 환경지도과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관리·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환경피해 인정자”란 역학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환경성질환이 우려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환경피해 인정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보건법」 제15조2항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2.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제5조(지원) ① 환경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경비
2.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및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 1. 5.]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27.>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14. 3. 24.>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1호, 2022. 11. 2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중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4로 이동 <2021. 7. 6.>]